

상 벌 규 정

제정 1996. 3. 1.
 개정 1998. 9. 1.
 개정 1999. 5. 17.
 개정 2000. 9. 1.
 개정 2012. 3. 1.
 개정 2014. 6.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20. 4.13.
개정 2020. 11.0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46조, 47조 및 학생 준칙에 의한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구) 학생 상벌규정 전항에 관한 사항 및 학생단체활동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학칙 제41조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및 피해자·신고자 등의 보호)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11.00.>

② 학생의 징계에 관한 조사 및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별지서식 1] 서약서 <신설 2020.11.00.>

③ 학교는 징계 대상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이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신설 2020.11.00.>

④ 학교는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0.10.00.>

제 2 장 포 상

제4조(포상) 제 5조(포상) ① 총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2.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3. 학·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5.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의된 학생

② 포상을 받은 학생의 포상내역은 학적부에 기록 한다.<신설 2020.11.00.>

제5조(발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포상발의 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스쿨원장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의 발의) ①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학생포상 담당부서에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1.00.>

1. 공적 조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신설 2020.11.00.>
 2. 학생 포상 추천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신설 2020.11.00.>
- ② 포상 추천은 해당스쿨(학과) 지도교수, 원장 또는 행정부서장이 할 수 있다. <신설 2020.11.00.>

제 3 장 징 계

제 6 조(징계) 제7조(징계)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징계는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하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서면 혹은 출석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학생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3.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흥기 등 유해물품을 소지, 사용한 학생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5. 학교 건물을 포함한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학칙 제15장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규정」 제63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학생
7. 기타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학생
8.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8조(징계의 발의) ①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 담당부서에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를 발의 하여야 한다. < 신설 2020.10.00.>

1. 징계의결 요구(발의)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2. 스쿨(학과) 원장 징계의결 의견서 [별지서식 제5호] 1부
3. 해당 학생 진술서 [별지서식 제6호] 1부

~~제7조(교내봉사) 제9조(교내봉사) 제6조에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중 그 정도가 미약하여 교육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에서 정하는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다음의 불이익을 받으며, 교내 봉사활동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회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가. 다음 학기 각종 교내 장학금 수혜 금지
- 나. 기숙사 퇴사 및 다음 학기 입주 불가
- 다. 일정기간 도서 대출 금지 (기본 8주. 방학기간은 미산입)

~~제8조(근신) 제10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제6조에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중 그 정도가 심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학생
2.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근신에 준할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 9조(유기정학) 제 11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개월 1주일에서 3주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에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유기정학에 준할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10조(무기정학) 제12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4주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하며,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학교에 출석하여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제9조에 제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무기정학에 준할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11조(퇴학) 제13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 처리한다.

1. ~~제10조에 제1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학생
3.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당해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훼손한 학생
4. 성향이 불량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5.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제적에 준할 만한 행위를 한 학생

- 제14조(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① 퇴학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또는 스쿨원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1.00.>
- ②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모든 학生活동의 참여가 금지된다.<신설 2020.11.00.>
- ③ 정학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징계 개시일로부터 해제 일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신설 2020.11.00.>
- ④ 퇴학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신설 2020.11.00.>

- 제15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00.>
- ②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 대상 학생에게 징계 발의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별지서식 제7호],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0.11.00.>
- ③ 위원장은 학생의 출석예정일 7일 전까지 학생에게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8호] <신설 2020.11.00.>
- ④ 해당 학생이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00.>
- ⑤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그 사실을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11.00.>
 2. 진술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신설 2020.11.00.>
 3. 진술 포기의사도 밝히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학생지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20.11.00.>
 4.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학생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이메일, 전화 연락방법으로도 연락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0.11.00.>
 5. 학생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연행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1.00.>
 6. 서면진술서의 제출기회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도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00.>
- ⑥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의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지도교수, 스쿨원장에 대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00.>
- ⑦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자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9호] <신설 2020.11.00.>
- ⑧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2020.11.00.>

~~제12조(징계의 통보)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징계 담당부서에서 징계사실을 대상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삭제 2020.11.00>~~

~~제16조(징계의 통보)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의결 및 재심의 결과를 학생징계 담당부서에서 대상학생, 대상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스쿨원장, 학적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별지서식 제11호], [별지서식 제12호]< 개정 2020.10.00>~~

~~제13조(정지 또는 자격상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지 또는 상실된다. <삭제 2020.11.00>~~

제17조 (징계처분의 효력) ①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의 징계 내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신설 2020.11.00.>

②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칙 제50조(장학금) ②항에 따라 장학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한다. 이후 근신 이상 징계해제(말소) 처리가 되는 경우 장학 자격이 부여되며, 징계 받은 다음 학기부터 장학 자격이 적용된다.<신설 2020.11.00.>

③ 근신 이외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분일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 수업을 포함한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신설 2020.11.00.>

④ 퇴학 이외의 징계 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신설 2020.11.00.>

⑤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 기간 중 학교에서 부과한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00.>

⑥ 징계처분의 효력은 방학 등의 사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신설 2020.11.00.>

⑦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의 결과가 확정 전까지는 애초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신설 2020.11.00.>

제18조(징계처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3호]<신설 2020.10.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총장은 재심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재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신설 2020.10.00.>

1.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3. 징계 의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4호]<신설2020.10.00.>

제19조(징계처분자의 학적처리) 다음 각호에 따라 징계처분자의 학적을 처리한다

1. 유기정학의 경우 학적 상태는 징계 처분 당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2. 무기정학의 경우 학적 상태를 휴학으로 변경하며 휴학의 기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21조(징계해제)에 의하여 해제가 될 경우 학적을 복적한다.
3.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하며, 징계 기간 중 학생 자의에 의한 학적 변동 신청(휴학, 자퇴, 전과 등)은 불가하다.
4. 재심의 결과, 징계해제, 징계말소에 따라 학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감면) 제20조(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선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징계해제) 제21조(징계해제)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가 해제된다.

1.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징계가 해제된다.
 - ~~2. 무기정학은 지도교수와 스쿨원장의 견의에 따라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2. 정학(유기, 무기)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스쿨원장의 특별지도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15호]와 징계처분 해제 의견서[별지서식 제16호]가 학생징계 담당부서에 제출되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20.10. 00.>
 - ~~3. 징계 해제시는 학생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 서약서를 받아 학생지도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2020.11.00>

제16조(징계말소) 제22조(징계말소) ~~다음과 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징계를 말소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후 학내·외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학업성적이 현저히 향상되어 1년을 경과한 경우 단, 처벌 당시 졸업학년의 경우는 6개월 경과 후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징계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2. 징계말소 청구는 지도교수와 스쿨원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말소의 결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말소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학적부에 기록되며, 징계처분이 말소된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말소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종전에 받은 징계처분에 소급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제17조(학적부 등재)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단, 졸업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삭제 2020.11.00>~~

~~제18조~제2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